

## 처분통지서(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) 공시송달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에 따라 당사자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, 기존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 등)시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 사무실,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, 이사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8. 31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예정된 처분의 제목	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	
당사자	조합명	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( 존속기간: 2016.11.28~2021.11.27)
	업무집행조합원	(주)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(대표이사: 김용석)
	주 소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6-11, 205호( 초량동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'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'의 업무집행조합원인 (주)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처분 * 처분통지서(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)(투자회수관리과-4441, 2021.4.21.) 2. 동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 미제출 3. 동법 제72조에 따른 월별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 미보고(2020년11월~) 4. 위 1~3에 근거 벤처투자조합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, 벤처투자조합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통지(공시송달)하고 청문을 개최(2021.6.23.)하였으나 이에 불참하는 등 그 시정의지를 밝히지 않음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,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월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 취소 (등록취소일 : 2021.9.9.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1항제6호, 제8호, 제9호 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,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5. 생략	

	6.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. 생략 8.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.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					
처분담당자	기관명	중소벤처 기업부	부서명	투자회수 관리과	담당자	윤원민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180(어진동)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			전화번호	044-204-7727
	전자우편 주소	1min@korea.kr			팩스번호	044-204-7729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.

2021년 8월 26일

**< 알 릫 사 항 >**

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3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끝.